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8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의자 : 주호영 · 이상희 · 김용태
고동진 · 김성원 · 강선영
조은희 · 최보윤 · 신성범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 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 등록할 수 없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고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생부의 출생신고) ① 부 또는 모가 제46조제1항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 생부는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의 기재를 생략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신고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 없다.

② 생부는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는 것으로 제44조제4항에 따른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844조에 따른 부는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부는 친생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자신을 부로 기재하는 내용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신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을 갖는다.

⑤ 시·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친생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⑥ 시·읍·면의 장이 이 조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생부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46조의2(생부의 출생신고) ①</u></p> <p><u>부 또는 모가 제46조제1항에</u> <u>의한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u> <u>생부는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u> <u>른 부의 기재를 생략한 출생신</u> <u>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u> <u>신고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u> <u>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u> <u>없다.</u></p> <p><u>② 생부는 제1항에 따른 출생</u> <u>신고를 하는 경우 유전인자의</u> <u>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u> <u>검사결과를 첨부하는 것으로</u> <u>제44조제4항에 따른 첨부를 갈</u> <u>음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가</u> <u>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844</u> <u>조에 따른 부는 출생신고를 하</u> <u>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u> <u>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가 제</u> <u>기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u> <u>다.</u></p> <p><u>④ 생부는 친생부인의 청구를</u></p>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자신을 부로 기재하는 내용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신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 시로 소
급하여 인지의 효력을 갖는다.

⑤ 시 · 읍 · 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 후 2년이 지나
도록 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친생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⑥ 시 · 읍 · 면의 장이 이 조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생부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